

(1965년 인구대비, 이하 같음)이
0.15(15%) 이상일 것

② 국세조사결과 市町村의 인구가 1970년 20만명 이상, 30만명 미만이고, 공업집적도가 3 이상 또는 인구증가율이 0.15 이상일 것.

③ 국세조사결과 市町村의 인구가 1970년 10만명 이상, 20만명 미만이고, 공업집적도가 3 이상일 것

④ 전항의 공업집적도라 함은 국세조사인구를 토대로 1970년 당해지역 1인당 공업부가가치액을 전국의 1인당 공업부가가치액으로 나눈 수치와 동년 당해지역 거주가능지역 1km²당 공업출하액을 전국의 거주가능지역 1km²당 공업출하액으로 나눈 수치를 합산하여 이를 2로 나눈 값임.

⑤ 전항의 1인당 공업부가가치액과 거주가능지역 1km²당 공업출하액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함.

⑥ 법률 제 2조 2항 2호의 政令에서 정한 市町村은 별표 2의 市町村으로 하고, 그 구역은 1972년 10월 1일 현재의 구역으로 함.